

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555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6. 17.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1018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D 사이에 2017. 6. 2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D 사이에 2017. 6. 2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45,126,4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5,126,4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0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20. 2.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시가는 53,312,000원, H 임야의 시가는 61,224,800원, I 임야의 시가는 80,852,4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 위 각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위 제3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제3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45,126,556원[= 시가 53,312,000원 - {피담보채무액 29,999,765원 × 53,312,000원 / (53,312,000원 + 61,224,800원 + 80,852,400원)},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5,126,491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126,4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

별지(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 임야 496㎡
2. 경상남도 밀양시 , 임야 1270㎡
3. 경상남도 밀양시 , 임야 4165㎡

===이 상===